

윤리강령 준수는 언론자유와 근간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기하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선포했으며, 그 후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현 한국신문협회), 한국통신협회, 기자협회 등 각 언론단체들이 추가로 이를 채택했다. 이 강령과 요강은 여타 매체의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의 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언론윤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강령과 요강에 나타난 한국언론윤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왜곡과 남용을 낳을 뿐이며,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또한 책임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의 윤리로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옹호하는 것이 언론윤리의 토대라는 것과 그러한 자유의 향수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즉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언론윤리의 당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둘째, 보도는 사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평론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편파성의 배격을 강조했다. 특히 보도에서 중대한 오보가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공익에 위배되는 개인의 이익이나 무가치하고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넷째, 언론은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 실천요강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언론인은 높은 품격과 직업적 긍지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이의 실천을 위해 특히 언론인은 강자에 영합하지 말아야 할 것과 물질적 정신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동시 강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진국에 못지 않는 훌륭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스스로 상징적 존재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 상황에 의해 언론윤리의 기초인 언론의 자유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 결과 언론의 독립성은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언론의 윤리 가운데 사실보도와 공정한 평론 및 독립성은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언론이 사실보도와 공정한 평론을 못하거나 또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다만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와 제약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우리 언론은

경제지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보도와 평론에서 공정성을 지킬 수 없었다. 이 같은 경제지배에 의한 언론통제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대기업의 방계기업으로 경영되는 언론의 경우, 그것이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정경유착에 의해 정치적 통제가 언론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형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로는 광고주에 의한 통제로, 대광고주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들에게 유리한 PR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관행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정치적·경제적 통제에 의한 언론윤리의 무력화는 언론자유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80 년대에 들어와 언론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그 시행이었다. 언론기본법에 앞서 제정 공포된 5 공화국의 헌법은 「언론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동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 20 조 제 1 항)고 규정한 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 2 항)고 명시하여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부수립 후 제 4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8 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피해배상 청구의 권리가 명시된 것은 5 공화국의 헌법이 처음이었다. 또한, 언론기본법은 정보청구권과 취재원 보호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부여했으나 언론표현물에 대한 압수규정을 강화하는 등 언론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이밖에 정기간행물이 발행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폭력 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 찬양하는 일을 반복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고, 언론인에게 진실보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언론기본법은 제 5 공화국의 언론환경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언론기본법은 형식적으로 공익언론을 위한 특징적인 법조문도 마련하고 있었지만, 제 24 조는 문공부 장관이 신문·통신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언론기본법은 80 년대의 우리나라 언론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다양하게 자유주의적 언론의 본래적 기능을 다했다기보다는 언론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제유지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감시적 기능, 그리고 의견 및 쟁점제시와 비판의 기능보다는 공익성과 책임성의 명분 아래 체제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기본법하의 언론은 스스로 엄격한 자기검열을 할 뿐 아니라 문공부도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정부의 비위에 적합한지를 매일매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우리의 언론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법익을 훼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우리의 언론이 얼마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1 년부터 1988 년까지 지난 8 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건수 가운데 침해유형으로서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을 보면 지난 8 년 동안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된 침해건수 가운데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침해가 전체 신청건수의 71%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경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지만 해당 연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침해를 사유로 중재신청된 건수가 전체의 80%를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의 언론매체들이 얼마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보호에 소홀한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1980년부터 1988년 말까지 9년 동안 연도별 결정내역 가운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차지하는 건수를 보여주는 것이 <표 2>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란 윤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해당 신문사에 주의·비공개경고·공개경고 등을 한 것을 뜻한다. (표 2)를 보면 지난 9년간의 결정 가운데서 「타인의 명예와 자유의 장」 위반사유가 가장 많아 전체결정건수의 약 64%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침해를 사유로 결정된 건수는 전체 결정건수의 약 21%에 달한다. 이를 다시 「타인의 명예와 자유의 장」 위반사례에 한정시켜 볼 때 사생활침해는 601건 중 193건으로 약 32%로 나타났다.

<표 1>침해유형

(%)

연도	구분	명예 및 사생활	신용권(재산)	저작권	계
'81년		23(52.3)	15(34.1)	6(13.6)	44(100)
'82년		41(82.0)	9(18.0)		50(100)
'83년		58(81.7)	13(18.3)		71(100)
'84년		39(72.2)	12(22.2)	3(5.6)	54(100)
'85년		44(74.6)	15(25.4)		59(100)
'86년		25(51.0)	24(49.0)		49(100)
'87년		39(82.9)	8(17.1)		47(100)
'88년		36(65.5)	19(34.5)		55(100)
소계		305(71.1)	115(26.8)	9(2.1)	429(100)

<표 2>연도별 결정이유별내역

이유명	연도별	'80	'81	'82	'83	'84	'85	'86	'87	'88	계
報道와 評論의 態度章 위반(41)	오과장 보도	10	10	6	11	4					41
他人의 명예와 自由章 위반(601)	불속한 여인 성년신원공개 미라버시침해 권리파보도손	5	5	18	5	7	3	8	1	1	53
		10	41	97	60	71	25	24	8	21	347
			39	34	15	19	14	30	8	24	193
				2		1				4	3
						1					5
品格章 위반(194)	소통만사기	17	14	30	18	12	5	2	7	3	108
			4	35	5	5	18	3			66
			1	1	2	2			1	2	11
									2	1	2
											7
報道基準章 위반(95)	악명공개 집단자살용어 용의자신원공 유죄자신원공 간첩신고자공 독립성-미풍양속저하	1	5	2	1	1		1	37	12	57
		8	5		2						18
		1	10								11
		3				1					4
		3									3
責任章 위반(2)		2								2	2
계		63	133	225	121	124	65	68	66	68	933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언론매체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을 얼마나 많이 공표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프라이버시침해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이 한국언론이 특히 타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그 어떤 윤리기준보다 월등하게 많이 침해하는 까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첫째, 우리의 규범문화가 아직 사생활을 존중할 만큼 민주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언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그렇게 빈번하게

공표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우리의 규범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일 것이다. 둘째, 언론의 선정주의 때문이다. 셋째, 언론인의 직업적 자질의 부족 때문이다. 특히 오보나 허위보도 또는 과장보도의 경우가 그러하다. 넷째, 언론인의 법의식과 직업윤리의식의 박약 때문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발족한 이래로 지금까지 18 년 동안 끊임없이 주의나 경고를 통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도 그 같은 윤리기준이 가장 많이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6.29 선언 이후 매체수 대량 증가해

언론의 공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우리의 언론은 1987 년 6.29 선언을 계기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6.29 선언에 담긴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부분은 사실 지난 수십년 동안 언론의 숨통을 쥐고 있던 권력의 무장해제선언과 다름 없는 것으로, 이 선언은 가깝게는 1980 년의 언론기본법으로 상징되는 언론의 통제질서를 깨뜨리는 조치의 시작이었으며, 멀게는 60 년대 이후 끊임없이 통제와 조정의 대상이 되어온 언론에 숨통을 터준 계기가 되었다. 6.29 선언 이후 언론계의 가장 큰 변화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 입법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정기간행물의 설립요건이 완화됨으로써 비롯된 매체수의 대량증가와, 언론노조의 결성 및 매체별 윤리강령의 제정이다. 특히 언론노조운동이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편집권확보와 공정보도문제 등 언론의 자기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그 큰 특징이 있다 하겠다. 매체수의 증가를 6.29 이전과 비교해보면, 일간지의 경우 38 개, 주간지가 6 백 18 개 등 모두 2 천 1 백 62 개가 늘어나, 1989 년 12 월말 현재, 일간지 68 개, 통신 2 개, 주간지 819 개 등 총 4 천 4 백종이 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수의 증가는 그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고 또 언론기관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언론사가 신속, 정확, 공정한 보도로 인해 언론이 지닌 바 공익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참신한 정보, 정확하고도 공정한 정보의 제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가 난립되어 만의 하나라도 상업주의로 기울어 과당경쟁을 일삼아 졸속, 과장, 왜곡, 선정적인 보도로 치달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형언할 수 없이 커질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우려의 조짐을 우리는 지난 1989 년에 이미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1989 년은 언론윤리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한해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문익환 목사 방북기사 오보」, 「평민당 대 조선일보 고소 사건」, 「중국 천안문사태 추측보도」, 「파스퇴르유업 대 중앙일보」와 「김성희씨 대 마드모아젤」의 법정 대결,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이선애 씨에 관한 과장보도」 등은 언론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로 언론의 과당경쟁의 결과 빚어진 졸속, 과장, 왜곡, 선정적인 보도에 의한 언론피해의 일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상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법적 유관단체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는 1989 년도에 총 121 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이는 1981 년 설립 이후 연평균 처리건수에 비해 2.2 배가 증가한 결과이다. 이를 침해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및 명예훼손이 87 건(71.9%)이고 신용훼손이 34 건(28.1%)이며, 이를 매체별로 보면

신문이 전체의 66.1%인 80 건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신문에 대한 중재요청이 1988 년(69.1%)에 이어 1989 년도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지난 2 년 사이에 일간신문이 2 배 이상 늘어난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되겠지만, 변혁기에 신문들의 사명의식 또는 책임과 윤리의식결여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문윤리위원회는 1989 년에 72 건을 자율심의하였다. 결정이유를 보면 「타인의 명예와 자유장」 위반이 28 건(38.8%), 「보도기준」 위반이 24 건(33.3%), 「품격장」 위반이 16 건(22.2%), 기타 「보도와 평론의 태도장」 위반과 「책임장」 위반이 각각 2 건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위반항목은 약명공개로서 전체의 23.6%인 17 건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봉욕한 여인의 신원공개 9 건, 프라이버시침해 10 건, 미성년자 신원공개 8 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신문이 거의 2 배정도 증가하였는데 (동 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하는 신문은 55 개사, 이중 신규는 28 개사) 심의건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위원회가 창간된 신규 신문사에 대해 당분간 심의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며, 실제로는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간행물윤리위원회는(1989. 8. 17 일 발족) 1989 년 10 월말까지 404 건을 심의하여 그 중 304 건에 대해 경이고, 93 건에 대해 주의의 결정을 내렸다. 이것을 다시 매체별로 비교해 보면 주간신문은 경고가 단 1 건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월간지가 전체의 82.2%인 332 건, 주간잡지가 17.6%인 71 건을 차지하고 있다. 월간지가 이처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6.29 선언 이후 월간잡지의 대폭 증가(1,298 개 지에서 2,066 개지, 1989.10 월말 현재)에 따른 과당경쟁과 변혁기를 틈탄 혼란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부 몰지각한 잡지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매체수의 증가는 매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졸속, 과장, 왜곡, 선정적인 보도와 아울러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이버기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며, 언론을 권력기관화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사이버기자들은 광고강요, 약점을 미끼로 한 금품갈취, 폭언 및 불법행위, 신문책자 등 간행물 강매, 부당이권 개입, 가짜 기자증 판매 등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폐단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공보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언론관계 유관단체들에 사이버기자신고 및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언론사 각사별 윤리강령의 제정이다. 현재 1988 년에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창간에 앞서 동년 5 월 15 일 「언론의 사회적 책무에 따르는 언론인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실천속에서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해 신문윤리강령과 동 실천요강을 제정하였다. 동 윤리강령은 언론의 상업성 및 선정성을 배격하여 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 오보의 정정 및 사생활의 보호를 규정하며, 이의 실천 및 감독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1990 년 1 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하며,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전사원의 뜻을 모아 방송강령을 제정했다. 동 강령은 총장에서 ①

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만 행사하며 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②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하며, ③ 인간의 존엄성 및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며, ④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하며,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강령에서는 제 57 항에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것을, 제 6 항은 초상권 보호, 제 8 항에서는 논평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방송인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윤리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체 각 사별 윤리강령의 제정과 그 실천을 위한 노력은 자율경쟁시대의 언론이 안고 있는 타율규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언론자유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한겨레신문과 한국방송공사의 윤리강령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그 많은 언론사들이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정될 윤리강령은 첫째, 개념상 간결해야 함은 물론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원리원칙들이 숙고된 도덕적 판단과 부합되어야 하며, 셋째, 규정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어야 하고, 넷째, 언론현실에 적용가능 한 원리원칙이며 동시에 실현가능하며 구체적인 현실상의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확고한 윤리의식 재정립해야

1987년 6.29 선언 이후 우리의 언론은 그야말로 언론의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시대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경쟁시대의 언론상황은 언제나 통제의 구실을 안고 있다. 책임을 외면한 무제한의 언론자유는 또 다른 통제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유언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소극적 대책보다는 전문성 제고와 윤리의식의 확립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정보도와 편집권의 독립을 쟁취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난 2년간의 언론 활동은 바람직한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언론자유는 크게 신장시켰으나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다. 아직도 언론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고,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보도를 해놓고도 정정보도와 사과논의 오히려 자유·자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점점 더 깊게 빠져 들어가고 있다. 추측기사, 오보·과장보도, 사이버 언론, 강제·위협적인 광고 게재, 무비판적인 관급기사의 수용, 심층 포괄적인 진실보도보다는 단순한 사실보도로 오해의 소지를 낳게 하는 등 언론윤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언론윤리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러 측면에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언론계 자체 내에서 자정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인간은 누구든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자유로운 행동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에는 규제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언론은 오래 전부터 각종 윤리위원회 등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몸가짐을 조심, 점검해 오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우리는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이나 1980년 「언론통폐합」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언론윤리의 상실로 인해 언론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어 언론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언론은 또다시 타율에 의한 규제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와 언론사 자체가 확고한 윤리의식을 제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자율규제기구를 형식적으로 존립시킬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켜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인력의 보충, 규정의 보완, 또 심의결정에 승복하는 풍토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각 언론사들은 그들 회사의 설립 목적과 언론철학에 바탕을 둔 그들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생활화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극소수의 언론사들만이 언론윤리강령을 갖고 있을 뿐이다.

셋째, 「옴부즈맨」 제도 같은 자율심의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각 언론사에서는 「기사심의실」 제도가 있으나 그 역할은 미미한 것 같다. 수년전 어떤 교향악단이 실수하여 곡목을 잘못 연주했을 때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하고 사과를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연주했다. 언론들은 그 교향악단이 잘못을 자인하고 시정한 사실을 높게 평가, 보도했다. 언론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넷째, 언론인에 대한 정기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여하간에 언론은 누가 무어라 하든, 어떠한 역경에 처하든, 사리사욕을 앞세우지 않고 공익과 공공성을 우선시 하며 언론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자기의 고유한 직무라고 생각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그 언론은 훌륭한 윤리의식을 가R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유재천, '한국의 언론윤리', 언론의 법적 통제, 한병구교수회갑기념논문집 서울: 나남, 1989).
- 이광재, "언론윤리위기 사회문제로 등장, 심의에 승복하는 풍토 조성돼야", 신문과 방송 1989. 12.
- 이광훈, '언론민주화와 신문의 창복간 붐', 신문과 방송 1989. 12.
- 정진석, '80년대 한국언론의 공과', 신문과 방송 1959. 9.